

심 사 보 고 서

- 김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전재난과)
※나영민 의원 외 13인 발의



산 업 건 설 위 원 장 이 복 상

김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2월 8일(화)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2. 1. 24.
- 나. 발 의 자 : 나영민의원 외 13인
- 다. 회부일자 : 2022. 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2. 8.(제2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나영민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에서 시민을 위하여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박정일)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시민을 위하여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련 부서인 안전재난과에서는 그동안 지역 내 각종 공익 행사의 질서 유지·하천 정화 활동·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순찰 및 재난복구 등에 참여하는 김천시 해병대전우회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된다고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음.
- 현재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 복구 및 구호활동 등 김천시 해병전우회는 봉사활동을 통해 김천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에 필요한 상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김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를 지원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김천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천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2.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5. 저수지,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김천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제4조(포상) ①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